

『2023년도 법정필수교육』 실시 계획(안)

2023. 05. 17.(수), 인사관리팀

□ 추진배경

-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공공 책임의식 강화 및 성숙한 조직문화 조성
-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(안) 마련

□ 교육대상 및 목표 이수율

- (교육대상) 기관에 재직 중인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 (인턴 포함)
- 법정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

구 분	정규직(A)	무기계약직(B)	계약직(C)	인턴(D)	파견·휴직자(E)	합계* (A+B+C+D-E)
인원	148	13	14	8	13	170

* 교육대상자 인원은 휴직·파견자중 업무복귀자, 신입 및 퇴사 직원 발생 시 인원 변동 가능

- (목표 이수율) 교육별 70% 이상 이수 (120명 이상)

□ 교육운영

- (운영·관리) 법정교육에 대한 운영 총괄은 인사관리팀이며, 교육과정별 세부관리는 관련 담당부서*에서 추진

* 4개 부서 총 16개 과정(인사관리팀 6개, 감사실 4개, 운영지원팀 3개, 지식정보팀 3개)

< 교육 운영 역할 분담 >

- ◇ (총괄 부서) 연구회 및 위탁업체 연락, 교육 대상자 목록 작성, 교육일정 조정, 전직원 공지 등
- ◇ (담당 개별부서) 이수율 관리(참여 독려 및 보고), 및 정부부처(기관)에 결과 보고 등

- (교육시행)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「'23년도 출연연 공동 법정 의무교육」에 참여·추진

※ 연구회에서 대표 법정교육 14개 과정을 (주)휴넷과 일괄계약 후 비용지급 : [붙임 1] 참조

- (참여교육 및 예산) 2023년도 기관 필요 법정 의무교육 총 16개 과정 중 14개에 공동교육 참여하며, 2개 미포함 교육(*)은 담당부서(감사실) 별도 시행

* 갑질예방 교육, 청탁금지법 교육

※ 공동교육으로 개별 기관은 추가되는 예산소요는 없으며, 미포함된 교육과정(2개)은 약 180만원 소요

- (수강방법) 개인별 ID발급 후 온라인 교육 (전년도와 동일)

□ 교육별 시행(안) 및 결과활용처

○ 교육은 6월부터 시작하며, 이수결과는 부서별로 관련 담당부처(기관)에 통보

순번	교육명		담당부서	독려 예정월	관련부처	결과활용처	비고
1	4대 폭력 예방 교육	성희롱 예방 교육	운영지원팀	8월	여성가족부	담당부처(기관)에 결과보고	부서장 이수율 기관평가 평가항목 포함
		성매매 예방 교육					
		성폭력 예방 교육					
		가정폭력 예방 교육					
2	(사회적)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	인사관리팀	6월	보건복지부	담당부처(기관)에 결과보고	-
3	(직장 내)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		6월	고용노동부	의무보고는 아니나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	
4	아동학대 예방교육			8월	보건복지부	담당부처(기관)에 결과보고	
5	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			8월	고용노동부	기관평가	
6	근로자 안전보건교육		운영지원팀	분기별	고용노동부	기관평가	-
7	부패방지교육		감사실	9월	국민권익위	기관평가	부서장 이수율 기관평가 평가항목 포함
8	이해충돌방지 교육		감사실	6월	국민권익위	기관평가	
9	정보공개 교육		운영지원팀	7월	행정안전부	기관평가	-
10	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		지식정보팀	6월	과기정통부	담당부처(기관)에 결과보고	-
11	통일교육		인사관리팀	8월	통일부	담당부처(기관)에 결과보고	-
12	개인정보보호 교육		지식정보팀	7월	개인정보보호위	기관평가	-
13	정보보안교육		지식정보팀	7월	국가정보원	기관평가	-
14	인권교육		인사관리팀	8월	인권위원회	기관평가	부서장 이수율 기관평가 평가항목 포함
15	갑질예방 교육		감사실	7월	국무조정실	기관평가	
16	청탁금지법 교육		감사실	10월	관련법률	기관평가	

○ (교육기간) 매 교육은 6월 1일에 시작하여 ('23.10.31.)까지 연장하여 연중 시행

□ 개선 방안

○ (이수율 관리) 이수결과는 관련 담당부처(기관)에 의무 보고사항 및 기관평가 지표로 활용되어 각 담당 부서에서 교육 독려 예정

※ [붙임 2] 2022년의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(77.64%)로 21년 대비 이수율 22% 감소

○ (부서장 필수참여 및 관리) 부서장은 경영책임자로서 모든 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부서 구성원의 교육 참여 독려 및 관리 추진